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450

발의연월일: 2025. 5. 9.

발 의 자:정희용·고동진·김용태

배준영 • 박준태 • 김선교

유용원 • 박충권 • 김형동

정동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인근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가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받아 이를 추진토록 하고 있음.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불 등 재난으로 인해 지역의 산업기반, 중소기업 및 소상 공인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큰 경제적·사회적 피해가 발생한 경 우에도 지역경제 회복과 종합적인 복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가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재난지역에 대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지역개발사 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 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 피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안 제2조 및 제7조). 법률 제 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특수상황지역"을 "특수상황지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경 제 회복 및 종합적인 복구를 위한 지역개발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낙후지역"이란 「지방자치	5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같은 조 제1	
0호에 따른 <u>특수상황지역</u> 을	<u></u> 특수상황지역
말한다.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
6. • 7. (생 략)	6. • 7. (현행과 같음)
제7조(지역개발계획의 수립) ①	제7조(지역개발계획의 수립) ① -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	
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	
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지역개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도(이하 "시	

·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1.·2. (생 략) <u><신 설></u>

<u>3.</u> (생 략) ② ~ ④ (생 략)

.		
1. • 2. (현행고	구 같음)	
<u>3. 「재난 및</u>	및 안전관리	기본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 지역의 경제 회복 및 종합적 인 복구를 위한 지역개발사업 4. (현행 제3호와 같음)